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 번호	2022-38
----------	---------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운용 중이던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과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1조 ~ 제2조)
- 나. 공무원 재해 관련 준용기준 변경으로 근거 법령 변경(안 제3조, 안 제5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 제6조, 제9조 ~ 제1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

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당시까지 그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서울특별시의회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공무원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위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보상심의회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강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중 1명
2. 구청 관련 국·과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보상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심의회 의 간사) ① 보상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보상심의회 의 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접수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 의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보 상 금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 망 <input type="checkbox"/> 장 해 <input type="checkbox"/> 상 해				
심 의 회 심사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p>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강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p>					
<p>강 서 구 청 장 귀하</p>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